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령』 해설



이 은/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1. 머리말

선박안전법개정법률이 제185회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5470호(1997.12.17)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98.7.1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령이, '98.9.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각각 공포·시행되었다.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령에서는 기존의 「한국어선협회」를 개편하여 설립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정관, 임원, 승인사항, 예산 및 결산 등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적용대상선박의 범위, 우수사업장의 인정기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선박구난 및 해체에 관한 자격·시설기준·작업한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개정령에서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종류와 선박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령에 대한 주요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개정내용

〈주요 골자〉

- 선박검사증서를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하천에서 운항하는 선박 등을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정함.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정관,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 종전에 어선의 크기에 따라 3년 또는 4년으로 되어 있던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일반 선박과 같이 5년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선박검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없어도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바다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가. 법적용제외선박중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일부 선박의 범위를 정함(제2조)

중전에 선박시설기준의 적용면제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법적용제외선박으로 분명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도 적용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중전 해운항만청 고시(제95-25호 : '95.5.2)에 의하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던 계선중인 선박, 추진기관 및 범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어선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가 면제되어 왔던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 전>

- 법 : 법 제2조제2항
 - 선박시설기준 적용제외선박
 - 1.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1의2.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2.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 3.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기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선박
- 고시 제95-25호(95.5.2)
 -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선박
 - 1. 계선중인 선박
 - 2.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3. 호수 또는 하천만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업 또는 도선업에 종사하는 선박
 - 4. 총톤수 1톤미만의 선박
 - 5. 추진기관 및 범장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 선박

- 가. 연해구역이상을 항행하는 것
- 나. 위험물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기름이나 폐기물을 산적 운송하는 것

다. 특수선

라. 압항부선

- 6.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 다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에 한한다.

○ 어선법시행규칙 제52조

- 어선검사 면제선박

- 1.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 2. 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어선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개 정>

○ 법 제1조의2

- 법적용제외선박

-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2.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3.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4.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박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 영 제2조(적용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 1.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 2.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구역(호수·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의하여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에 있어서는 그 구역)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 각목의 선박을 제외한다.

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 또는 폐기물이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다.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3.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나. 「공배법」에 의하여 등록된 조선소에서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정함(제3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선소(공장)에서 선박을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으로 정함으로써 낙도 오지에서 전통적으로 자가건조하거나 소규모선박을 건조하는 어민에 미치는 영향과 미등록조선소의 상대적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였다.

다. 우수사업장의 인정기준을 정함(제4조)

법 개정전에 부령(해양수산부령 제31호 :

95.9.4)으로 정하여 적용하여 오던 것을 개정 법률에 의거 그 규정근거가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 인원, 자체검사조직, 관리기준 등 우수사업장인정을 위한 기준을 이영에서 규정하였다.

〈종 전〉

○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 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31호 : '95.9.4)

- 제4조(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기준)

- 제5조(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기준)

〈개 정〉

○ 영 제4조(우수사업장의 인정기준)

- 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기준(별표 1)

- 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기준(별표 2)

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내지 제7조)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민간전문검사기관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국어선협회」를 개편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 설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동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원의 정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임원의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원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였다.

〈종 전〉

○ 어선법(법률 제4559호 : '93.6.11)

- 제31조(어선협회)

1.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조사·연구 및

- 기술의 개발·보급업무와 어선검사업무
대행을 위하여 한국어선협회 설립
2. 어선협회는 법인으로 함.
 3. 어선협회의 업무
 - 가.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 나.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 다. 어선의 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업무의 대행
 - 라.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의 대행
 - 마. 어선용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 바.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대행
 - 사. 어선의 설계 및 건조감리등 기술위탁 업무
 - 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4. 어선협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어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6.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어선협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어선법시행령(대령 제14090호 : '93.12.31)
- 제5조(업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 어선에 관한 국제협약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어선에 관한 국내·외의 기술자료등의 수집 및 분석
 3. 어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자료등의 수집 및 분석
- 제6조(임원)

1. 구성
 - 회장 : 1인
 - 전무 : 1인
 - 이사 : 3인이내
 - 감사 : 1인
 2. 임명
 - 회장, 감사 : 해양수산부장관
 - 전무, 이사 : 장관 승인후 회장이 임명
- 제7조(임원의 임기)
 1. 회장·전무·이사 : 3년
 2. 감사 : 2년
- 제8조(임원의 직무)
 1. 회장 : 어선협회를 대표하고 업무 총괄
 2. 전무 : 회장보좌 및 유고시 그 직무 대행
 3. 이사 : 어선협회 업무분장
 4. 감사 : 회계 및 업무감사
- 제9조(승인사항)
 1. 매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조직·인사·급여·회계 기타 주요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제10조(예산과 결산)
 1. 어선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2.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편성후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
 3. 매회계연도 경과후 4월이내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작성후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함.
- <개 정>
- 법
- 제7조(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
1.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과 선박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 을 위하여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
- 2. 기술원은 법인으로 함.
 - 제8조(사업)
 1. 선박과 그 시설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2.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확인업무 대행
 3.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정업무 대행
 4.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5. 국제협약등 선박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의 연구·분석
 6. 선박의 기계·건조감리등 기술수탁업무
 7.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제7조의3(조직·운영등)
 - 기술원의 조직·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7조의4(민법의 준용)
 -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제7조의5(경비의 보조등)
 -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음.
 - 제7조의6(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아니면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명칭사용 금지
- 영
 - 제5조(기술원의 정관)
 1. 정관의 기재사항
 2. 정관변경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제6조(기술원의 임원)

1. 구성
 - 원장 : 1인
 - 이사 : 3인이내
 - 감사 : 1인
2. 임면
 - 원장·감사 : 해양수산부장관
 - 이사 : 장관 승인후 원장이 임면
3. 감사는 비상근으로 함.
4. 임기
 - 원장·이사 : 3년
 - 감사 : 3년
 - 제7조(기술원 임원의 직무)
 1. 원장 : 기술원을 대표하고 업무총괄
 2. 이사 : 기술원 업무분장
 3. 감사 : 회계 및 업무감사

마.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설정(제13조)

현행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일반선박의 경우에는 5년,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의 경우에는 4년, 길이 24미터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3년 인 것을 5년으로 일원화하고 국제협약의 검사 및 증서발급에관한조화제도(HSSC)를 수용 선박검사의 일률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종 전>

- 일반선박(법 제10조)
 - 검사증서유효기간 : 5년
- 배의 길이 24미터이상 어선
 - 검사증서유효기간 : 4년
- 배의 길이 24미터미만 어선
 - 검사증서 유효기간 : 3년

<개 정>

- 모든선박(영 제13조)

- 검사증서유효기간 : 5년

바. 자격증 없이 해체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정함(제16조)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을 제거하고 육지에 올려놓고 해체하는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해체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선박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해체에 따르는 선박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해양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폐선의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선박의 구난 및 해체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7조 내지 제21조)

법 개정전에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여 적용하여 오던 것을 개정법률에 의거 그 규정근거가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선박구난 및 해체업에 관한 자격등급, 시설기준, 자격증교부, 작업한계, 작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서 규정하였다.

<중 전>

○ 시행규칙(부령 제60호 : '96.3.15)

- 제40조의39(시설등의 기준)

1. 선박구난을 하고 하는 자의 시설등의 기준 : 별표 8

2. 선박해체를 하고 하는 자의 시설등의 기준 : 별표 9

- 제40조의41(자격증의 교부등)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격증 교부

- 제40조의44(작업한계)

1. 1급구난자격: 모든 해면에서 모든 선박의 구난

2. 2급구난자격 : 연해구역안에서의 총톤수 1천톤미만의 선박의 구난

3. 3급구난자격 : 평수구역안에서의 총톤수 500톤미만 선박의 구난

- 제40조의45(작업개시의 승인 또는 신고)(생략)

- 제40조의46(작업승인의 기준)(생략)

- 제40조의47(현장검사)(생략)

- 제40조의48(작업의 중지등)(생략)

- 제40조의49(작업완료 등의 신고)(생략)

<개 정>

○ 시행령

- 제17조(선박구난등의 자격)

1. 선박구난자격

가. 1급선박구난자격

나. 2급선박구난자격

다. 3급선박구난자격

2. 선박해체자격

- 제18조(선박구난시설 등의 기준)

1. 선박구난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시설등 : 별표 3

2. 선박해체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시설등 : 별표 4

- 제19조(선박구난 등의 자격증 교부)

· 해양경찰서장은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격증 교부

- 제20조(선박구난작업의 한계)

· 종전 시행규칙의 내용과 동일

- 제21조(선박구난등의 작업절차)

· 선박구난등의 작업을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 함.